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3
----------	-----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의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신설(별표)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적용
 - 1) 서울특별시: 당초 70,000원 → 변경 100,000원
 - 2) 광역시: 당초 60,000원 → 변경 80,000원
 - 3) 그 외 지역: 당초 50,000원 → 변경 70,000원
- 다.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 상향(2배 → 5배)
- 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등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3. 5. 1. ~ 5. 2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꺼번에지급 할”을 “한꺼번에 지급할”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
별로 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
호라목을 적용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의 기준에 의
하여”를 “영 별표 2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를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수하는 외에”를 “환
수하고,”로, “2배”를 “5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비 부정 수령이란”을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장 여부와 무관히”를 “출장 여부와 상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u>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u></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 ----- ----- ---에게----- ----- ----- 한꺼번에 지급할 -----.</u></p> <p>② <u>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u></p>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

라목을 적용한다.

② -----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영 별표 2에 따라 -----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 환수하고, ----- 5배 -----.

② -----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란 -----.

1. 거짓 -----

--
2. ----- 출장 여부와 상관 없
이 -----

<삭 제>

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

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

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
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
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
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총무과장 안상욱